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8 - 26 - 351호

안 건 명 개인정보 유출사업자 범규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5. 30.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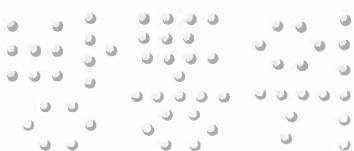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할 것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의 매출액 현황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단위 : 백만원) (관련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에 의해 1,168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신고(2017. 10. 4.)가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KISA)에 접수됨에 따라, 피심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현장조사(2017. 10. 25.)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의류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17. 10. 25. 기준으로 179,572건의 회원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다.

< 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

구 분	항 목	수집일	건수
회원정보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등	'91. 7. 1. ~ '17. 10. 25.	1,036,708건 (홈페이지 179,572건)

나. 개인정보 유출규모 및 경로

(1) 개인정보 유출규모

피심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 1,168건이 미상의 해커에 의해 2017. 9. 13.~2017. 10. 3. 기간 동안 유출되었다.

< 의 유출·정보 현황 >

구 분	유 출 항 목	건 수	중복제거
회원정보	이름, 집 전화번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1,286건	1,168명



(2) 유출경로

미상의 해커는 2017. 9. 13.~2017. 10. 3. 기간동안 피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4개의 IP주소에서 총 2,713,550번의 사전대입 공격을 시도하였고, 사전대입 공격 중 로그인이 성공한 총 1,286건(중복 제거시 1,168명)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3) 유출신고

피심인은 타 사이트에서 유출된 고객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다량의 로그인 시도가 있었음을 2017. 10. 3.에 인지하였고 2017. 10. 4. 10:54경에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KISA)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2017. 10. 4. 11시경 이용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였다.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사실 관계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관리자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2017. 10. 10.부터 보관한 사실이 있다.

LogNo	EventType	AdminMemberID	MenuName	EventType	EventMemo	EventLog	Adriidip	EventLogDate	EventPage
72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03.229.168	2017-10-10 17:07:53.00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565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8.34.209.2	2017-10-11 11:04:47.00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1112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8.34.209.2	2017-10-11 16:09:22.00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2451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03.229.168	2017-10-12 20:59:28.00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2452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03.229.168	2017-10-12 20:59:28.00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2455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03.229.168	2017-10-13 03:05:28.031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2455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03.229.168	2017-10-13 03:05:28.031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2812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03.229.168	2017-10-13 12:29:43.90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3898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6 16:51:59.560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3978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6 16:51:59.560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652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8.34.209.2	2017-10-17 17:32:50.91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03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2:50.91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05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2:50.91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12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3:00.75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14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4:11.12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16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4:27.51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17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4:29.73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18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4:32.06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20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4:32.06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21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5:04.02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22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7 17:35:16.07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89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05:15.000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90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05:22.77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91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05:34.12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92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05:55.76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93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06:02.76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94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06:08.72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95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06:03.92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97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20:04.437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99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20:18.29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799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20:20.559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800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20:40.49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4801	sh	sh	회원관리자	로그인	로그인	로그인	121.134.250.29	2017-10-18 09:20:48.723	/FileAdminWeb/System/AdminMemberList.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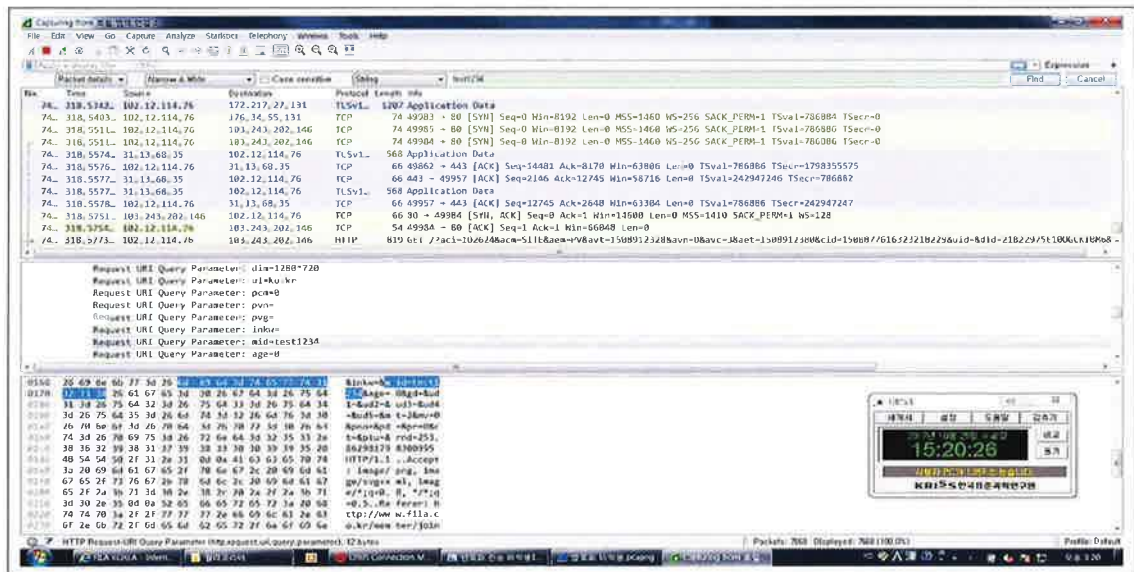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접속기록 중에서 식별자, 처리일시, 접속지 정보를 2016. 3. 14.부터 보존·관리하고 있으나 수행업무는 2017. 10. 10.부터 보존·관리한 사실이 있다.

MemberAdminId	MemberAdminId	MemberAdminId	MemberAdminId	MemberAdminId	MemberAdminId
3414	3415	3416	3417	3418	3419
3420	3421	3422	3423	3424	3425
3426	3427	3428	3429	3430	3431
3432	3433	3434	3435	3436	3437
3438	3439	3440	3441	3442	3443
3444					

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전송 시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이용자의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아이디 중복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2. 2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 통지 및 의견 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3. 14.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제2호)’,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제3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제1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제1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4조제3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6조제3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제1호),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제2호)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춘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4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거나 수기로 작성한 관리대장 등에 기록하고 해당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 등에는 신청자 정보, 신청 및 적용 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고시 제5조제1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개인정보의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탐지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불법적인 접속 및 운영, 비정상적인 행위 등 이상 유무의 확인을 위해 식별자(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접속일시(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시점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점) <년-



월-일, 시:분:초> , 접속지(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컴퓨터 또는 서버의 IP 주소 등), 수행업무(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제6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구간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 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야 하며, SSL(Secure Sockets Layer)인증서를 이용한 보안서버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안서버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접근통제{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의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않고 2017. 10. 10.부터 보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 고시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의 보관 및 점검{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을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접속기록 중에서 식별자, 처리일시, 접속지 정보를 2016. 3. 14.부터 보존·관리하고 있었으나 수행업무는 2017. 10. 10.부터 보존·관리하는 등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 고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전송시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아이디 중복확인 부분에서 ()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접근 통제	§28①2호	§15②1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권한 부여·변경·말소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행위(고시§4③)
	접속 기록	§28①3호	§15③1호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존하지 아니한 행위(고시§5①)
	암호화	§28①4호	§15④3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지 아니한 행위(고시§6③)



Ⅳ.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것

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할 것

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할 것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9조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위반행위가 2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8조는 ▲위반행위의 결과가 과실에 의한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위 두 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 규모,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는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다.



< 과태료 산출내역 >

위반조문	기준금액	가중	감경	최종 과태료
§28①2·3호	1,000만원	500만원	없음	1,500만원
계				1,500만원

다. 최종 과태료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 및 제76조제1항제3호(과태료)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위 원 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 원

김 석 진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